

대통령령 제 호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호나목2)를 삭제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식품자동조리·판매기영업: 식품 중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거나 자동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조리·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.

제26조제9호 중 “제21조제5호나목2)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”을 “제21조제5호다목의 식품자동조리·판매기영업”으로, “식품자동판매기의”를 “식품자동조리·판매기의”로 한다.

제27조제5호 중 “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”를 “식품자동조리·판매기영업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영업의 종류)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5. 식품소분·판매업 가. (생략) 나. 식품판매업 1) (생략) 2) <u>식품자동판매기영업: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. 다만,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3) ~ 6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1조(영업의 종류)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1)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3) ~ 6) (현행과 같음) <u>다. 식품자동조리·판매기영업: 식품 중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거나 자동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조리·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.</u>

6. ~ 9. (생략) 제26조(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 사항)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8. (생략) 9. <u>제21조제5호나목2)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</u>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·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<u>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</u> 제27조(식품위생교육의 대상) 법 제4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. 1. ~ 4. (생략) 5.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·판매업자(식용얼음판매업자 및 <u>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</u>는 제외한다) 6. ~ 9. (생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 제26조(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 사항)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제21조제5호다목의 식품자동조리·판매기영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식품자동조리·판매기의</u> ----- 제27조(식품위생교육의 대상) 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식품자동조리·판매기영업자</u> --- 6. ~ 9. (현행과 같음)
---	--